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뭄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 강화〉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19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6. 28.
3. 회부연월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협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¹⁾이 조치하여야 하는 가뭄대책으로 자재 및 물자의 비축과 유관기관²⁾과의 지원·협조 체제 구축³⁾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책무) ① (생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가뭄대책	5.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다.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신설>	라.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 제 구축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해당 위기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관
*가뭄 재난의 주관기관: 행정안전부(총괄),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 환경부(생활용수)
- 3) 가뭄 감시·전망(기상청), 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 현황 모니터링(산업부), 물 절약 등 대국민 홍보(문체부) 등 관련 기관 간 지원·협조 체제 구축

현행	개정안
라. (생략) 6. ~ 9. (생략) ③ ~ ⑥ (생략) <u><신설></u>	마. (현행 라목과 같음) 6. ~ 9.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u>제3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하여야 하는 책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가뭄대책으로는 ① 상습 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 ②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③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④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가뭄과 함께 대표적인 자연재난 유형에 해당하는 폭염과 한파의 경우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과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가뭄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가뭄 대비를 위한 내용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가뭄·폭염·한파대책을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구분	가뭄대책	폭염대책	한파대책
책무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 ◦ 가뭄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 폭염피해 예방 대책 ◦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계 구축 ◦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한파피해 예방대책 ◦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계 구축 ◦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또한, 각 지역 특성에 따라 가뭄 발생 가능성, 피해 규모, 대비 수단 등에 차이가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가뭄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가뭄대책과 관련한 책무로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과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계 구축”을 추가하고, 기존의 “빗물모으기 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과 “가뭄극복을 위한 시설·관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이 포함된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자연재난은 피해 규모가 크게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피해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비축하고 재난 대응 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 체계를 갖추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가뭄 재난의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는 매년 초마다 지역별 가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해연도의 가뭄 종합 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나 수립 기준 등의 부재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대책의 수준이 상이하고 일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며, 대부분의 수립된 대책이 T/F 구성현황, 위기단계별 행동사항 등만을 간략하게 나열하고 있어 실제 가뭄발생 시 실행계획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가뭄 대비와 관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가뭄 대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재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349